



대한지적공사
Korea Cadastral Survey Corp.

협정서



한국외국어대학교
HANKYONG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

대한지적공사 지적연구원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(이하 '양 기관'이라 한다)은 이 협정의 당사자로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정을 체결한다.

제1조 (목적) 이 협정은 국가 지적 관련 법제도의 발전을 추구하고 우수한 법조인력의 양성과 사회봉사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양 기관이 상호 교류하고 협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인적·물적 교류) 양 기관은 실무수습지원, 강의 지원, 공동 과제 연구, 법률 및 학술 정보 공유 등 인적·물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.

제3조 (실무수습) ① 대한지적공사 지적연구원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들에게 실무수습의 기회를 제공하고,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원활한 실무수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한다.

② 실무수습의 시기, 기간, 인원,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양 기관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.

제4조 (강의지원) 대한지적공사 지적연구원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 강사 파견을 요청할 경우, 필요한 강의 담당자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 (위탁교육과정 등의 제공)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대한지적공사 지적연구원이 그 소속 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교육과정이나 교육연수과정을 제공할 수 있다.

제6조 (정보의 공유와 제공) 대한지적공사 지적연구원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각자 업무 수행이나 학술연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장하고 있는 법률정보와 학술정보를 공유하거나 제공하는 데 상호 협력한다.

제7조 (비용 등) 양 기관의 교류·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경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양 기관이 협의하여 부담한다.

제8조 (비밀유지의무) 양 기관이 교류·협력 과정에서 취득한 학술·업무 기타 상대방과 관련한 정보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9조 (세부사항 협의)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양 기관이 추후 협의하여 정한다.

제10조 (협정기간) 이 협정은 체결된 날부터 3년간 유효하며, 대한지적공사 지적연구원 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협정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협정 종료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 같은 내용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협정기간 중이라도 합의에 의하여 협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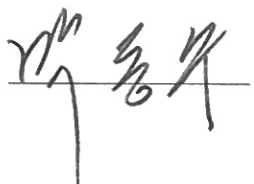
이 협정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정서를 2부 작성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1. 8. 4.

대한지적공사 지적연구원

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

원장 박동수



원장 박영복

